장애인전용보장성급여 전환 신청/변경/해지 신청서

【계약사항】

증 권 번 호	상 품 명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	가 입 자		-
		피급여자		-

【장애인전용보장성급여 ❑ 전환 신청 ❑ 해 지】

대상자		성 명	장애등록기간	시작일자	종료일자	증빙서류
피급여자						
수익자	사망시					
	생존시					
	만기시					

【장애인전용보장성급여 전환 변경】

대상자	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
		성 명	장애등록기간	시작일자	종료일자	성 명	장애등록기간	시작일자	종료일자	증빙서류
피급여자										
수익자	사망시									
	생존시									
	만기시									

■ 구비서류 ① 장애인전용보장성급여 전환 신청/변경/해지 신청서 1부.
②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장애인등록증, 장애인증명서 등)

상기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, 장애인전용보장성급여 전환 신청/변경/해지를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 자 : 20 년 월 일

신청인(가입자) : 서명/(인)

유 의 사 항

- 장애인전용보장성급여 전환 신청으로 인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는 연말정산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급여계약 인수 및 급여금 지급, 급여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.
- 『소득세법 제59조의 4(특별세액공제)
  -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
  -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(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)
- 장애인전용보장성급여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에 따름
  - 『장애인복지법』에 따른 장애인 및 『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』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  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
  -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
- [전환신청] 피급여자 또는 모든 수익자가 장애인이어야 적용 가능하며, 피급여자 또는 일부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.
- 가입자가 장애인전용급여 전환 특약을 직접 해지한 경우나 수익자를 비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자동 해지된 계약은 장애인전용보장성급여 재전환이 불가능합니다.(계약당 1회 한정)
- 장애인전용급여 전환특약 가입 신청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부담금만 장애인전용보장성부담금으로 처리됩니다.
- 가입중인 보장성급여 모두를 장애인전용급여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, 납입금액을 감안하여 전환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사항 : 보험콜센터 1577-3400(2번 보험)

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

(서식개정일자 : 2019.03.01.)